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신고된 교습비등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이외 금품 징수 금지〉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17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0.
3. 회부연월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

Ⅲ. 검토의견

1. 등록거부 사유 확대(일부가 동일한 교습과정 운영 시)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안 제6조)은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혹은 교습정지처분 기간 내에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가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 ⑤ (생략)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 -----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u>동일한</u>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1. ----- ----- ----- <u>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u> -----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u>동일한</u>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 ----- ----- <u>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u> ----- -----

2) 검토의견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¹⁾은 등록 말소 처분의 실효성을 위하여 학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혹은 교습정지처분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학원이 교습정지처분 등을 받아 정지기간 내에 있음에도 교습과정 일부만 바꾸어 학원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 동일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동일한 교습과정 뿐만 아니라 일부가 동일한 교습과정에 대해서도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등록말소 혹은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이 유사한 형태의 교습과정을 운영하여 사실상 정지처분 및 등록말소²⁾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최근 4개년 학원 등록 말소 및 폐지 현황>

구분(건)	2022	2023	2024	2025
등록말소/폐지	498	45	223	77

자료: 교육부

주: 2022년, 2024년에는 각각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원 전수조사를 통한 미활동 학원 및 교습소 일제정비로 인하여 건수가 많음.

-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거부는 신청자에 대한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등록거부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일부가 동일한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가 확장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일부가 동일한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실제 발생사례 등에 대한 조사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일부’에 대한 의미가 불특정적이어서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학국학원총연합회는 주관적 표현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임.

2.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또는 그 외 금품 징수 금지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안 제15조제4항)은 학원 등이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교습비 등 외에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생략)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u>금액을</u>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 ----- <u>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교습비등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u>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검토의견

□ 현행 법령상의 “교습비 등”의 범위와 관리체계를 보면 ‘교습비등’이란 학원법 제2조6호3)에 의하면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기타경비)’를 말하는데,

이때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는 기타경비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4)에 따라 모의고사비 등의 6가지 항목을 말함.

현행 학원법 제6조5)는 학원 설립·운영자 혹은 교습자 등은 학원의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1.10.25>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항목	내용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록·신고 시 교습비등을 함께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동 법 제15조제4항은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등록·신고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금액을 징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영어 유치원 등에서 과도한 교습비 징수로 인하여 사교육 과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2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아대상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학원 수 728개 중 384건의 학원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게시 위반 등이 총 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 조사 위반 현황>

지역	외국인 강사 채용 위반	교습비등		등록외 교습 과정 운영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	거짓, 과대 광고	학원 명칭 표시 위반	시설 위반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성범죄등 경력 미조회	제장부 관리 소홀	기타	계
		초과 징수 등	게시 위반										
서울	0	13	21	0	2	6	6	13	5	1	2	2	71
부산	0	1	1	0	5	5	4	6	0	0	0	1	23
대구	0	0	4	1	2	7	3	0	0	0	0	0	17
인천	0	2	1	11	3	4	1	0	0	0	0	3	25
광주	0	2	1	0	0	0	1	0	0	0	0	2	6
대전	0	0	0	0	1	4	1	0	0	0	0	0	6
울산	0	4	5	1	0	0	4	0	0	0	0	0	14
세종	0	0	0	0	0	2	0	0	0	0	0	1	3
경기	0	28	25	9	23	26	33	5	10	0	2	22	183
강원	0	0	0	0	1	1	0	0	0	0	0	0	2
충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남	0	2	0	0	2	0	3	1	0	0	1	3	12
전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0	0	1	1
경북	0	0	0	0	0	0	0	0	1	0	0	0	1
경남	0	1	3	0	1	2	0	0	1	1	0	0	9
제주	0	0	0	0	6	5	0	0	0	0	0	0	11
계	0	53	61	22	46	62	56	25	17	2	5	35	384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기부금 등 교습비등 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교습비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보다 경감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짐.

- 학원법 제15조제4항⁶⁾은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그 형태와 무관하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은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이므로,

개정안에서 새로이 포함된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 역시 현행법상의 관리대상이라고 보여지나,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습비등 초과 징수 시 과징금 부과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안 제15조제7항)은 교습비 등을 초과징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생략)	제15조(교습비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교육감은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신설></u>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검토의견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로서, 개정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로 인한 부당이득, 즉 불법적인 경제적 이

익을 환수하기 위한 취지임.

참고로 , 현행 학원법상 교습비등을 초과징수한 경우에는 학원법 제 23조⁷⁾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데, 동 개정안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초과징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행정질서벌⁸⁾) 규정을 삭제하고 벌칙(행정형벌⁹⁾)으로 변경함. 따라서 동일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가 중복적으로 부과(과징금과 과태료 또는 과징금과 벌금)됨.

- 헌법재판소는 형벌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에 대하여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결정¹⁰⁾한 바가 있으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이 병과된다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 수 있음¹¹⁾.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목적이 경제적인 이익 환수로서 과태료 또는 행정형벌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입법례를 보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8) 행정질서벌 : 행정질서벌은 행정상 의무 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벌

9) 행정형벌 : 행정 형벌은 행정법규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법상 형벌(징역, 벌금, 구류 등)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10) 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2001헌가25

11) 헌법재판소는 동일 행위에 대해 벌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면 그러한 중복 제재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99헌가18)

므로, 과징금과 행정형벌 및 과태료의 중복 부과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입법례>

법률	조문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유료도로법」	제2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2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2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한편, 이와 같은 불법이익의 환수 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징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배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있음.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매출액 비례형 ②부당이득 배수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부당이득 배수형의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

<과징금 관련 입법례>

구분	법률명	과징금 상한 기준	주요 위반 행위
매출액 비례형	공정거래법	20% (관련 매출액)	고질적 담합 (부당공동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
	표시광고법	2% (관련 매출액)	거짓·과장 광고 등
	환경범죄단속법	5% (관련 매출액)	무단 배출

	개인정보 보호법	10% (전체 매출액)	정보 유출 '26. 3. 16. 개정(과거 3%)
	전기통신사업법	3% (관련 매출액)	망 중립성 위반,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등
부당이득 배수형	자본시장법	2배 (부당이득)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가상자산보호법	2배 (부당이득)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등
	하도급법	2배 (관련 하도급 대금)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 탈취 등
영업정지 같은형	영유아보육법	최대 5,000만 원	원아의 학습권 피해 방지
	의료법	최대 10억 원	환자 생명 및 지역 의료 공백 방지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습비 외의 금품에 대하여 학원법상 정의하는 ‘교습비’와 문구가 일부 동일하여 혼선을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교습비등 초과징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벌칙)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안 제22조 및 제23조)은 등록·신고된 교습비등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이외의 금품을 징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을 현행 과태료(행정질서벌)에서 벌금(행정형벌)으로 상향하여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2조(벌칙)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

②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 10. (생 략)	<u>과하여 징수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의 가액이 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의 가액이 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7의3. ~ 10.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 안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은 교습비등 또는 금품을 초과징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취지임.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금전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반해, 징역 및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형법상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반사회적 행위 등 위법행위에 가하는 행위임.

이에 현행 초과징수 행위가 행정형벌을 부과할 만큼 반사회적이고,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①학원법의 적용대상에는 개인과외교습소 및 소규모 학원들도 포함하고 있어 비례성 측면에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으며, ②행정형벌은 처벌 대상자에게 전과를 남기는 등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처벌 기준과 관련하여, 벌칙의 수준을 300만원(초과징수 금액 및 금품 가액)을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초과징수 금액에 따라 형벌의 수위가 달리 정해진다는 점에서 금액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과태료가 소요되는 절차나 기간이 짧고, 가중 부과가 가능한 등 부과액을 상향하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